

제 4 장 현행 감리보고서의 문제점

4.1 감리보고서의 정보제공기능의 미흡

정보시스템 감리인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개발기관이 작성한 산출물과 시스템에 대하여 객관적 제3자로서 감리를 수행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감리의견을 형성하여 이해관계자(발주기관 및 개발기관)에 전달한다. 이러한 감리의견은 감리보고서로 작성되어 감리인과 발주기관, 개발자간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기술적 감리보고서는 내용 및 형식면에서 볼 때, 주로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효과적이나 발주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감리인은 송신자에 해당하며, 감리보고서의 기능은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으며, 증대되는 가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안정성, 신뢰성이다. 감리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통한 의견을 감리보고서에 개진하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주장이어야 한다. 근거있는 주장이란 전달될 메시지이며, 이것이 감리보고서 이용자에게 효과적이라면 독립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성실성, 권한, 승인과 같은 속성이 조사과정에 있어서와 같이 전달과정에서도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메시지의 수신자는 자기의 선호에 따라 메시지를 거부 또는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지각, 해석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도 명확하고, 송신자와 수신자의 의미내용이 일치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수신자의 신념(현실적인 지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수신자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감리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헌신적인 전문가로서의 독립적인 태도가 견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성은 감리인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감리인의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즉, 감리인의 독립성이나 업무능력은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리결과에 이용자들이 인식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신자

에 해당하는 감리결과에의 이용자들이 감리인의 독립성과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면, 감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발된 정보시스템이 의뢰기관의 사업 계획이 사업자에 의하여 원만히 수행되어 그 결과물이 신뢰할 만한 품질을 확보하여 운영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감리인은 기술적 혹은 관리적으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녀야 하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독립성의 확보이다. 감리인은 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객관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뢰기관은 감리시행기관 선정 시 조직이 편성해 놓은 감리비용이나 감리결과에 대한 조정가능성과 같이 일의 실무를 맡은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준하여 선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중 중요한 한 가지가 고객(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확인서명, 의사결정 지연, 임의적인 추가/변경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감리인은 이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용이하지 않다. 감리의뢰기관은 감리기관과는 용역계약으로서 '갑'의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감리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감리인에게 보고서와 관련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발주기관과의 조정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감리법인은 다음 사업의 감리 수주 또는 관련기관의 감리사업 수주에 영향을 받게 되는 염려가 있다.

4.2 정보시스템 감리 보고기준의 명확성 미흡

현행 감리기준 및 감리프레임워크에 따른 감리보고서 작성기준에 대해 상세화가 미흡하여 감리인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유사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의 보고 기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행 감리기준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은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감리보고서에 대한 작성 기준뿐

만 아니라, 각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감리 활동 결과물인 감리보고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보고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감리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보시스템 감리활동의 다양화에 비추어 현행 감리보고서 작성 기준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감리법인 또는 감리인의 감리유형에 따른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활동유형을 보면, 정보시스템감리의 경우 한국전산원 기준에 의거 작성하는 양식의 정보시스템 감리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의 진단, 평가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나, 진단(평가)결과보고서, 컨설팅보고서 등의 경우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감리보고서가 사용된다. 또한, 발주기관 으로부터 감리활동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감수, 감정 등의 다양한 요청을 받는 경우에 의견서, 감수 보고서, 감정서 등의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리, 검토의견서, 자문의견서, 감수보고서, 감정서 등 감리법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종류(audit, review, consulting, advisory 등)에 대한 보고서의 형식 및 작성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각 보고서의 효력 또는 공신력 등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감리보고서 작성기준의 불명확성은 감리인에 따라 감리 방식, 보고서 작성 방식에 편차가 크게 된다(한국전산원,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작성지침 및 기준 개선방안 연구). 즉, 감리인의 개선권고사항 지적사항 분석 결과, 감리인 개인별 취향에 따라 활동위주로 지적한 경우와 업무위주로 지적한 경우가 다양하며, 직관에 따른 특정 부분만 샘플링하여 시험/검토하고 의견을 제시(일부 예시만 제공)하는 경우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험/검토하고 모든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가 혼재하며, 유사한 지적사항을 모아서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제시(카테고리화)하거나 유사한 것을 여러 지적사항으로 나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감리분야를 일반적인 영역(프로젝트관리, 응용, DB, 시스템구조)분야로 정하여 감리하거나 하나의 서브시스템을 감리영역으로 나누어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연관성에 따라 응용, DB, 아키텍처를 모

두 부적정 판단을 내려야 하나, 편의상 일부만 부적정 또는 대표로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으며, 개별 지적사항에서는 타 분야에서 검토되어 지적될 사항이 혼재된 경우 (프로젝트관리에서 지적되어야 할 내용이 응용시스템에 지적되는 경우 등)가 있어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감리지침에 감리보고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 일관성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감리의 기본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정량적 기준 및 객관성 미흡

감리보고서는 감리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나, 정량적인 기준 보다는 정성적인 내용의 작성으로 인해 감리의뢰기관 또는 피감리기관과의 쟁점이 많이 발생한다.

현재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성적 판단의 사례는 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총평은 각 분야별 현황 판정기준이 4단계(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로 되어있으나, 정량적인 판정기준이 아닌 감리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 개선권고사항에 있어서 개선유형 판정기준이 3단계(우선개선, 통상개선, 협의개선)로 되어있으나, 사업목표 달성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통상개선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애매 모호한 표현이다.
- 중요도(materiality)에 대한 “상“, “중“의 판단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감리인의 주관적이고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감리계획 단계에서 사업유형과 자체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설정한 “감리 중점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주로 중요도 “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타 문제점들은 “중“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

요도 개념이 명확히 분리됨으로써 감리 영역별 검토의견(평가) 작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정량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리점검해설서에 제시된 중요도의 개념은 이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해당 점검항목/검토항목이 대상사업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여부만을 표현하며, 총평의 개선유형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표 4.1〉 정보시스템 감리의 상세점검표

감리시점 : 분석		감리영역	
감리시점	점검항목		
분	허해업무를	1. 현행업무	

감리보고서의 작성 시 단순히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지적 사항도 있으나, 실제 기술내용을 검토한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며, 동일하게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일정관리, 범위관리 등과 같이 문제의 심각도가 정량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파악할 수 없게 기술되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적사항이 사업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

게 되므로 감리인은 감리보고서 작성 시에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감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4 감리보고서 구성의 문제점

(1) 감리 관련 용어의 문제

감리기준에 따른 개선 유형에 “협의개선“이 있는데 과거의 권고사항을 변경한 것이다. 권고 성격의 내용을 주관기관, 개발기관 양측에 부여할 때에는 협의개선이란 내용이 적절하지만, 감리의뢰기관이든 피감리기관이든 한쪽에만 개선권고의견을 부여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의개선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므로 용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형식상의 문제점

감리보고서에 기술되는 사항 중 사업개요는 동일 사업에 대해 감리를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중간감리, 최종감리) 동일하게 작성되도록 되어 있다. 즉, 감리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감리이므로 감리보고서마다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감리계획의 경우 다분히 형식적인 계획서로서 감리계획에 대한 공문에 포함된 감리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감리 수행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즉, 사전검토를 통하여 감리인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의 범위, 규모, 특성, 적용 방법론 등을 바탕으로, 감리시점, 감리일정, 감리인수 등을 감안하여 감리기준 제9조[감리시행] 제1항에 따라 감리기준의 기본점검표와 감리영역별 지침을 근거로 하여 상세점검표(초안)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 감리는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에는 표본(sampling)기준 및 적용 등에 대한 감리방법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개선권고사항은 프로젝트 수행의 관리적, 기술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프로젝트 수행에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고, 프로젝트 전체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세 검토사항 기술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개선권고 유형의 정의에서 보여지듯 우선개선과 통상개선은 모두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이해가 부족하여 우선개선이 통상개선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개선의 개수가 많으면 부적절 검토의견과 연관되어 진다고 생각하고, 감리종료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 시급성이나 중요성과 무관하게 개선 권고유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우선개선의 개수를 줄이려는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의 개선권고유형의 정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정의에 입각하여 통상개선을 준 경우, 정작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커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리 의뢰기관이나 피감리기관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시점에 실시하게 되는 최종 감리의 경우, 현행의 통상개선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이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이후 단계까지 개선하라는 것의 의미가 매우 애매하다. 이미 검수를 완료하고 사업자가 철수하는 상황에서 감리의뢰기관이 운영하면서 개선을 하라는 것인지, 개선을 완료해야만 검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여 감리인은 주로 우선개선을 제시하려고 하고, 피감리기관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개선을 줘야 한다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개선권고유형 정의가 애매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최종 단계 감리에서의 통상개선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단계와 무관하게 세부 지적사항별로 감리 대상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줌으로써 감리 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이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내용상의 문제점

현행 감리보고서는 기술적인 사항 중심의 감리점검항목에 의한 감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리가 수행된 결과, 정보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사업의 성공요소와 감리점검항목간에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개선요구사항이 사업목적에 얼마나 중요한지, 개선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 완료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감리인의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감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나, 현행 감리기준은 이런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프로젝트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대개 사업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는데, 이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하는 문제와는 별개인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지만, 시스템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내용적으로 상당기간 보완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으며, 최종감리 시점에서는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감리보고서에는 적정 또는 보통으로 판정하고, 시정조치 완료 확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대상 프로젝트의 핵심성공요소(Critical Success Factor) 및 핵심성공요소별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보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감리보고서는 이런 측면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즉, 각 감리영역별로 감리기준에 따른 기본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으로는 한국전산원에서 발간한 정보시스템 감리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감리 점검해설서'를 활용한다고 해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감리영역별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검토항목이 고의로 배제되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감리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만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누락될 수 있고, 그 결과 프로젝트 전체의 현황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현행 감리기준에 따르면 상세검토사항은 크게 '가. 검토현황', '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프로젝트에서

적용이 잘되어 다른 프로젝트에서 참고로 할만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굳이 한다면 ‘검토현황’의 ‘검토의견’란에 언급할 수는 있으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형평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감리기준에 따른 기본 점검항목에 의한 점검표를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작성방법의 문제점

감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권고사항(꼭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즉, 감리점검항목에 기반하여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선권고사항만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데이터모델링이 미흡함 또는 논리설계가 미흡함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1:1 또는 1:M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나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응용시스템의 경우 단위 기능별 잘못된 점을 나열하여 감리내용은 많으나, 감리 점검항목 수준으로 보면 하나의 항목만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이너 항목 관점 보다는 메이저 항목 관점으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간의 논란을 방지하고 감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리 계획서의 중점검토항목, 새롭게 도입을 제시한 중요도 개념, 사업유형별 점검항목 등을 연계하여 감리 검토의견 작성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감리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 필요

감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산출물의 검토가 필요하나, 현장감리 수행 시 프로젝트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및 산출물에 대한 감리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PMS, 형상관리, 요구사항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내용 혹은 보안을 이유로 감리 시에 접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충분한 사실 확인에 지장을 받고 있기도 하다.

프로젝트 수행 시 소위 공식산출물이라고 하는 것만 감리자료로 제출하여 산출물에 대한 연관관계의 파악이나, 산출물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 감리증적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감리보고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은 감리를 통한 사업의 위험요소를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감리인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약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4.5 감리보고서 활용의 문제점

'정보시스템 감리 보고서는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리보고서의 작성은 감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이용자들이 있으며, 감리보고서에서 기술하는 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감리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현행 감리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양식은 텍스트 위주의 보고서로서 이해성과 가독성이 미흡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감리보고서 전체가 IT전문 기술 용어와 설명을 나열한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료회의에서 발주기관 참석자 대부분은 보고서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성공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의 제공이 미흡하다.

감리보고서에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결과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 시정조치 결과에는 감리인이 미흡하다고 사례로 든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감리보고서에 기술된 사례만을 수정/보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보시스템 감리가 제한된 자원으로 여러 제약조건에서 수

행되므로 위험기반감사기법(risk-based audit methodology) 및 샘플링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이용에 관한 법'에는 감리지적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장감리 수행시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리인은 감리보고서 작성시에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6 감리보고서 관리

(1) 감리인의 비밀준수 의무

감리인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004-72호, 2004.12.17) 이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0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여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윤리강령에도 '법에 의한 공개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없으며, 부적절한 대상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적절한 승인이 없는 한 정보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감리인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감리보고서의 공개 여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대형화, 투명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감리보고서에 대한 공개요청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감리법인 또는 감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보고서의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소환이나 정부규제 기관에 대한 소명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리라 본다.

〈표 4.2〉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공개에 관한 신문기사

조달청, 감리지적 받았었다 [한국일보 2005-09-30 06:36]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이 구축 초기부터 내부조작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29일 입수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구축 최종감리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감리기관들은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에 "조달처리 데이터베이스(DB)서버의 경우 아주 민감한 자료가 있으나, 이에 대한 패키지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사용자의 악의적인 조작·침해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하 생략)

감리보고서의 특성 즉, 정보시스템의 설계, 구성도, 보안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감리보고서의 공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공개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보고서 보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